

과 업 지 시 서

(2024년 하반기 북정고가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4. 6.

성남시 수정구

용역과업지시서

1. 용역명 : 2024년 하반기 북정고가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동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

3. 과업대상 시설물

연번	시설물명	안전점검 구분	규 모		종별	형식	준공 년도	비고
			연장(m)	차선				
1	북정고가교	정기점검	1,625	6	1		1994.12	

4. 적용기준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8-45호)
-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4) 기타 관련법규

5. 과업수행기간

-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나. 발주자의 요청으로 용역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6. 과업일반사항

- 1)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3)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 4) 과업수행자는 수행업무가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5) 과업수행자는 작업 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 6) 과업 수행에 사용하는 각종 측정 장치는 정밀도나 정확성이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 7) 과업수행자는 현장 과업수행 시 안전모 등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은 물론 밀폐공간이나 도로상에서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8)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 중 월간실적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익월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간공정이나 기타자료 제출 등을 수시 요구할 경우 책임기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9) 과업수행자는 과업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상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적극적인 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10)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등을 발주청의 사전 승인없이 본 용역과 관련없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11)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주요 점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 12)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특별한 사정이나, 과업수행자의 용역성과품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및 기타 계약 조건의 위배 시 발주자는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3)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해당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1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과업수행자의 책임

- 1)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3)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4)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5)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고 서식1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 후 개선하여 보안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 방침
 - 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 물적 투입범위 포함
 - ③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 ④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 ⑤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⑥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⑦ 유해,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⑧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6)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 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용역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보건 예방을 위해 필요시 안전보건관리비 추가 적용한다.

8. 과업의 내용(정기점검)

1) 기본과업

①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② 현장조사

-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③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④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시 시행한다.

9.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1) 과업수행방법

- ①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 ①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착수계 제출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가.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다. 기술용역공정예정표

라. 참여기술자 편성표

마.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바.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사.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①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 아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가.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범위

나. 관련자료의 자료 보유 현황

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 ②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 사전검토 내용

나.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마.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업무협의를 및 공정보고

- ①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나. 투입 인원(장비) 현황

다.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③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과업수행 여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발주처 요청시**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다. 최종보고회 : 준공 10일 전

10.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 ①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 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나.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2) 시설물의 외관조사

- ①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②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③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나.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다.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라.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마.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 ④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침가)시설물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 ⑥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가.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석필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하자검사

① 시공 당시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을

나. 보수·보강의 적합성

다.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라.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11.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①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 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①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자 접근방법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내용의 변경

- 1)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2)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여기술자의 교체

- 1)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2) 과업수행중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보고서 작성

-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야장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외관조사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 3)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일시와 기타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 5) 기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하여 작성한다.

15. 성과품 제출

- 1) 제출시기
대상 시설물에 대한 용역완료 후 과업기간내 제출
- 2) 제출서류
 - ① 보고서 5부(요약보고서 포함).
 - ② 성과품 USB 2set.

16. 보안 및 비밀유지

-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 4)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5)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17. 참여기술자의 교체

- 1)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2) 과업수행중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8.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비고
1. 사전조사 • 자료검토 • 현장답사	■						
2. 현장조사 • 부재별 상태조사등		■					
3.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 (구조검토)			■				
4. 유지관리방안				■			
5. 보수·보강방안 제시 • 관리주체 협의 • 보수,보강방안 제시					■		
6. 보고서 작성 • 종합보고서 작성 • 인쇄,준공						■	

<서식1>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부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6.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 운영관리		

평가항목	평가기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	„